

ER-170-03

대학생활관 운영지침

[제 정 2012. 05. 30.]
 [1차개정 2016. 07. 04.]
 [2차개정 2017. 08. 14.]
 [3차개정 2020. 07. 0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칙 제96조 제2항과 생활관 운영지침 제1조에 의거하여 광주과학기술원(이하 “본원” 이라 한다) 대학생활관(이하 “하우스” 라 한다)의 운영, 조직 및 관리와 생활관 예산·결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우스제도) 대학생의 주거공간은 하우스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하며 하우스제도의 도입취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우스는 지스트대학의 교육에 있어서 교과 교육과 함께 올바른 생활을 위한 교육의 장이다.
2. 하우스는 대학생활을 건강하고, 깊이있게 그리고 다양하게 보낼 수 있는 인성교육의 장소이다.
3. 모두가 공평하게 공동체 생활을 해가며 자치능력과 협동심을 키운다.
4. 각각의 하우스는 독자적인 성격과 활동에 따라 자체의 대학문화를 구축해 간다.
5. 지스트 대학의 하우스는 성공적인 교육을 위한 기반이 된다.

제3조(조직구성 및 담당부서) ① 하우스에는 하우스마스터를 두고, 대학 생활관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대학장이 겸임한다. 하우스마스터는 하우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위원장을 맡는다. <개정 2016. 7. 4>

② 위원회는 하우스의 관리 및 운영, 학생지도 및 하우스 내에서의 학생활동을 총괄적으로 담당한다. 위원회구성은 대학 생활관장(하우스 마스터), 하우스 지도교수 및 2인의 학생대표로 한다. <개정 2020. 7. 2>

③ 하우스 운영협의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설치한다. 하우스 운영협의회는 하우스 운영위원과 상담실장, 학사지원팀장, 각 하우스의 학생대표와 총학생회장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 7. 4>

④ 하우스 운영협의회는 매학기 1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소집하며, 위원회, 하우스 마스터 및 하우스연합회의 요청에 의하여 추가로 소집될 수 있다.

⑤ 하우스별로 자치위원회를 두며, 자치위원은 하우스장 및 산하 부서로 구성한다. <개정 2017. 8. 14>

⑥ 하우스의 관리 및 지원업무는 학사지원팀(이하 “지원부서” 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4조(하우스의 지도) ① 하우스내의 질서와 학생 지도를 위하여 생활조교(RA: Residential

Assistant)를 둘 수 있으며, 하우스자치위원회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8. 14>

② 생활조교는 매 학년도 하우스에 입사한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하우스마스터가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최대 1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4>

③ 생활조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4>

④ 생활조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8. 14>

1. 하우스 내 생활 지도(신고 접수, 단속, 벌점 부여)
2. 하우스 내 구성원의 멘토링
3. 대학생활관 생활수칙에 의거한 징계·포상
4. 기타 하우스운영위원회의 요청 업무

제5조(입사원칙) ① 하우스의 입사 자격은 본원 재학생으로 학사과정 4년차까지 한다. 다만, 하우스의 수용능력에 따라 입사를 제한 할 수 있다.

② 연차초과자 학생에게도 수용능력에 따라 추가로 입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하우스의 입사허가 기간은 학기단위로 한다.

제6조(입사허가) ① 하우스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입사원서를 제출하여 하우스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입사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사에정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입사보증금 징수) ① 본원은 쾌적한 환경을 보존, 유지하기 위하여 입사생으로부터 입사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입사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하우스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8조(대여물품) ① 하우스 입사자에 대하여는 책상, 의자, 책꽂이, 침대, 매트리스, 옷장 등을 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여 받은 물품은 임의로 원외에 반출할 수 없다.

③ 물품 파손시 변상하여야 한다.

④ 대여 물품은 퇴사시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입사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하우스에 입사할 수 없다.

1.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퇴사처분을 받은 자 및 무단 퇴사자
3. 전염병 질환자 및 보균자
4. 생활태도가 불량한 자
5. 기타 정당한 사유로 하우스 운영위원회가 입사를 허가하지 아니한 자.

제10조(각 호실의 입사정원) 생활관 각 호실의 입사정원은 2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 사항은 하우스 운영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4>

제11조(실 배정 및 이동) ① 실배정은 하우스운영위원회의 감독 하에 지원부서에서 담당하며, 그 결과는 즉시 하우스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확정한다. <개정 2017. 8. 14>

② 입사생은 임의로 실을 이동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실 이동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실 이동원서를 제출하여 대학 생활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퇴사) 입사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소정기간 내에 퇴사하여야 한다.

1. 제9조의 입사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휴학, 자퇴, 제적되었을 때
3. 전염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생활관 사용과 단체생활이 곤란하다고 하우스 운영 위원회가 인정할 때
4. 이 지침 또는 생활수칙을 위반하여 퇴사처분을 받게 될 때
5. 생활관 관리비 납부를 3회 이상 체납한 자
6.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등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조치로 원에서 일괄 또는 부분 퇴사 조치를 실시하였을 때
7.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등 위기상황에 원의 정당한 주의 및 예방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퇴사 처분을 받게 될 때

제13조(사업계획및예산서) ① 하우스연합회는 매학년도 종료 2개월 전까지 차기학년도 하우스사업계획 및 예산서(안)을 하우스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하우스운영위원회는 사업계획 및 예산서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심의하고 의결하여,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 시행한다. <개정 2017. 8. 14>

② 하우스연합회가 하우스사업계획 및 예산서(안)을 수립할 때 위원회 간사부서와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결산서) ① 지원부서는 해당 학기중의 수입 및 지출내역을 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하여 결산서를 작성하고, 당해 학년도 종료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받아야 한다.

② 심의의결된 결산서는 대학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승인된 것으로 보며, 하우스운영협의회에 통보하여 개선 및 발전방안이 강구되도록 조치한다. <개정 2017. 8. 14>

부 칙<2012. 05. 30>

①(준용사항)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생활관운영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생활관운영지침에 없는 사항은 하우스운영위원회에서 과반수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②(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지침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 7. 4>

①(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8. 14>

- ①(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0. 7. 2>

- ①(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